

인천지방법원 2021. 2. 4 선고 2020가단263078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수성

담당변호사 이도희

피 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중

변론 종결 2021. 1. 14.

판결 선고 2021. 2. 4.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10. 12. 체결된 증여계약을 43,569,542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3,569,54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C와 피고가 2017. 10. 1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한다)에 대하여 체결한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와 원상회복을 구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민법 제406조 제1항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있는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 즉 그에 의하여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으며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다1123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9. 4.2. 인천지방법원 2019카단1284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신청을 하였는데, 그가압류신청서와 가압류신청 진술서에는 'C이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자신의 처인 피고에게 무상으로 증여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렀으므로, 위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C와 피고의 사해의사도 충분히 인정된다. 위 증여계약 후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감축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을 할 의무가 있다. D 주식회사가 1억 4,000만 원의 가액배상 청구권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가압류 하였으므로, 긴급하게 가압류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C와 피고의 관계,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C의 무자력과 이 사건 부동산이 C의 유일한 부동산이었다는 점, 가액배상으로 주장하는 금액의 산출 근거 등을 보충한 보정서를 제출한 사실, 법원은 2019. 4. 18.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3,735만 원의 가액배상청구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가압류결정을 하여 2019. 4. 23. 이 사건 부동산에 가압류등기가 마쳐진 사실, 이 사건 소는 2020. 10. 6. 제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적어도 2019. 4. 2.경 C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그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민법 제406조 제2항에 정해진 제척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손화정

부동산의 표시

인천광역시 남동구
호

(1동의 건물의 표시)

인천광역시 남동구 동

복합식구조 경사스라브지붕 32층 아파트

1층	114.0976㎡	2층	590.8685㎡	3층	590.8685㎡
4층	590.8685㎡	5층	590.8685㎡	6층	590.8685㎡
7층	590.8685㎡	8층	590.8685㎡	9층	590.8685㎡
10층	590.8685㎡	11층	590.8685㎡	12층	590.8685㎡
13층	590.8685㎡	14층	590.8685㎡	15층	590.8685㎡
16층	590.8685㎡	17층	590.8685㎡	18층	590.8685㎡
19층	590.8685㎡	20층	590.8685㎡	21층	590.8685㎡
22층	590.8685㎡	23층	590.8685㎡	24층	590.8685㎡
25층	590.8685㎡	26층	590.8685㎡	27층	590.8685㎡
28층	590.8685㎡	29층	590.8685㎡	30층	590.8685㎡
31층	313.6807㎡	32층	241.5987㎡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인천광역시 남동구 대 40031㎡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18층 호 철근콘크리트구조 115.3907㎡

(대지권의 표시)

소유권대지권 40031분의 64.1087

· 이상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관할·